

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103
----------	------

2017년 11월 23일  
도시안전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7년 9월 27일, 김태수 의원 (찬성자 10명)
- 나. 회부일자 : 2017년 10월 12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77회 정례회 제3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
(2017년 11월 23일 상정, 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김태수 의원)

### 가. 제안이유

「정부조직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, 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임.

### 나. 주요골자

- 1) “국민안전처장관”을 “소방청장”으로 변경함(안 제2조)

### 3. 검토보고요지 (수석전문위원 이상근)

- 본 개정안은, 상위법인 「정부조직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한편, 위원회 수당지급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안 제2조는, 2017.07.27일 상위법인 「정부조직법」이 개정되어 기존의 국민안전처가 분리되어 독립된 소방청으로 개편됨에 따라 상위법의 조문과 일치하도록 하려는 것임.
- 또한 안 제7조는,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에 따라 지급 될 수 있도록 수당지급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라 사료되며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음.

[표 1] 안 제2조 및 안 제7조에 대한 개정안 비교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장례지원 대상자) 이 조례의 장례지원 대상자는 「소방공무원법」에 따른 소방공무원이 「소방기본법」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에서 정한 소방관련 활동 중 사망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순직으로 인정한 사람으로 한다.	제2조(장례지원 대상자) ----- ----- ----- ----- 소 방청장----- ---
제7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	제7조(수당 등) ----- 위원에게는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에 따라 ----- ----- ----- -----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 략
5. 토론요지 : 없 음
6.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: 해당없음
7. 수정안의 요지 : 해당없음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의원 전원 찬성)
9. 소수의견의 요지 : 해당없음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## 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국민안전처장관”을 “소방청장”으로 한다.

제7조 전단 중 “위원에 대하여는”을 “위원에게는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에 따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장례지원 대상자) 이 조례의 장례지원 대상자는 「소방공무원법」에 따른 소방공무원이 「소방기본법」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에서 정한 소방관련 활동 중 사망하여 <u>국민안전처장관</u>이 순직으로 인정한 사람으로 한다.</p>	<p>제2조(장례지원 대상자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소방청장</u> ----- -----.</p>
<p>제7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참석한 <u>위원에 대하여는</u>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	<p>제7조(수당 등) ----- <u>위원에게는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에 따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